

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, 임면권자 및 임무(제12조제3항 관련)

구분	인원	임면권자	임무
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·수석병역판정 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원	1명	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 소장	○기관의 장의 신체검사업무 수 행 보좌 ○신체등급의 판정
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·병역판정검사전 문의사 또는 군의원	34명 이내	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 소장	○내과·정신건강의학과·신경 과·피부과·비뇨의학과·일 반외과·성형외과·심장혈관 흉부외과·정형외과·신경외 과·안과·이비인후과·진단 방사선과·병리학과·진단검 사의학과·가정의학과·치과 등 각 과별 검사

비 고

1.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, 인원 및 임무는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른다.
2.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석군의원 및 군의관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3. 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